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고성군수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2015.2.24.~2020.2.23.)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3조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현 원장	소 재 지	규모(m ²)			보육아동		보 육 교직원
			대지	연면적	층수	정원	현원	
고성보듬 이나눔이 어린이집	허미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 대로 2829-18	998	655	2	99	99	17

- 위탁개요

- 위탁 운영기간: 2020. 2. 24. ~ 2025. 2. 23.(5년)
※ 기 위탁내역: 2015. 2. 24. ~ 2020. 2. 23.(5년)
- 위탁방법: 재위탁(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라. 기대효과

- 아동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제공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마. 향후 추진계획

- 2019. 10월: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19. 11월: 1차 사전심사 및 자료 검토
- 2020. 1월: 면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2020. 1월: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

바. 참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 관계 법령: 별첨 2

-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

◇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재위탁 방식으로 관련 제반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3조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II 위탁개요

□ 재위탁 대상

시설명	소재지	건립일	규모(m ²)			정원	교직원수	비고
			대지	연면적	층수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18	13.01.29	998	655	지상2	99 (현원 99)	17	

□ 현 위탁체(자) 현황

시설명	원 장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위탁체명	대표자	소재지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허미경	개인	허미경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18	2015.2.24. ~2020.2.23.

□ 재위탁 사유 : 위탁약정 기간만료(2020.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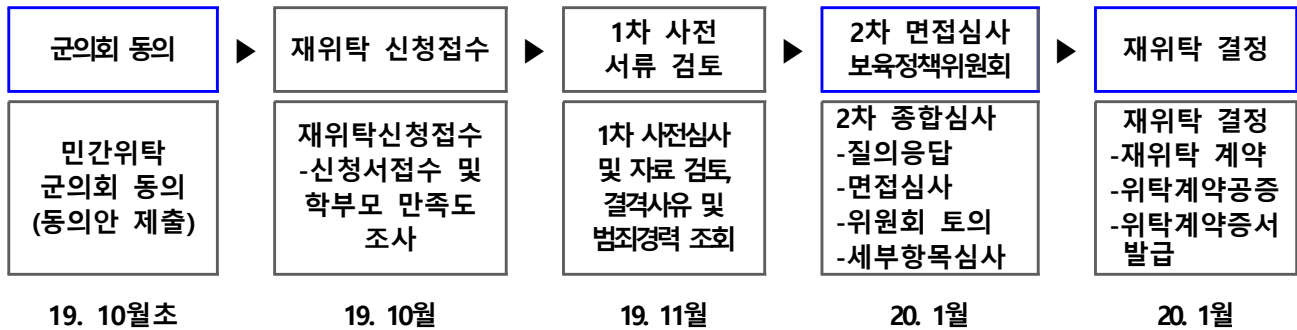
□ 재위탁 기간 : 2020. 2. 24. ~ 2025. 2. 23.(5년)

□ 재위탁 심사

- 심사기준 :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보건복지부 심사기준 표)
 - ①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③ 어린이집 운영계획 ④ 운영체의 공신력 ⑤ 운영체의 재정능력

○ 심사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심사 후 결정

□ 재위탁 추진절차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19. 10월 임시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10월 중

– 재위탁신청 포기시 변경위탁(공개모집)으로 추진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위탁체 관계서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원장 관계서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

○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2019. 8월 말 기준으로 접수

□ 학부모 만족도 조사

○ 기 간: 2019. 10월 중

○ 대 상: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이용 아동 학부모

○ 조사방법: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

–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대상 설문지 배부

□ 재위탁 심사

○ 심사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심사 후 결정

○ 심사기준: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보건복지부 심사기준 표)

심사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세사항목(12개항목)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 시설운영 관리, 보육사업실적, - 회계관리의 적절성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평가인증, 보육업무경력 -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 운영계획 등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 운영체의 공신력	10	- 공신력, 지도점검, 지적사항 실태 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심사방법 및 결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
- 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개별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모집)으로 추진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 1월 중
- 장 소: 군청 중회의실
- 참석대상: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 14명

□ **위탁 계약 체결: 2019. 11월 중**

- 재위탁 기간: 5년

IV 기대효과

-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
-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르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구성), 제7조(위원의 임기)

□ 구 성: 14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 원: 14명(위촉직 12, 임명직 2)
- 간 사: 보육담당
(보호자 대표 4, 공익대표 4,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1, 보육교사 대표 1, 공무원 2)

□ 회 의

- 정기회의: 년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 ※ 2019년 회의개최: 2회(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 임 기: 2년 (1회에 한해 재위촉 가능)

□ 기 능: 다음 보육사업 대하여 심의·의결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법 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